

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20. 1. 8 선고 2019가단770 판결 [소유권이전등기말소]

전 문

원고(선정 당사자) A

피 고 1. B

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태용

2. C

변론 종결 2019. 12. 18

판결 선고 2020. 1. 8

주 문

1. 이 사건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.
2. 소송비용은 원고(선정당사자)가 부담한다.

청 구 취 지

원고(선정당사자, 이하 ' 원고' 라 한다) 및 선정자들에게,

1) 피고 B은 경주시 D 임야84,116㎡ (이하 '이 사건 부동산'이라 한다) 중 64,285'84,116지분에
관하여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1963. 6. 12. 접수 제 1209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(이하 ' 이

사건 제 1등기와 한다) 의,

2) 피고 C는 이 사건 부동산 중 19,831/84,116지분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00 . 2. 15. 접수 제 6924 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(이하 ' 이 사건 제 2등기'라 한다)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
이 유

1.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

가. 원고 주장의 요지

피고B의조부E은1963년경집안묘지용도등에쓸요량으로이사건부동산으로 분할되기 전의 토지인 경주시 D 임야 90, 049㎡ (9정 8무보) 를 전 소유자 F로부터1963 . 5. 2. 자로 매수하였는데, 그 소유권이전등기는 매수자 아닌 피고 B 명의로 마쳤는바, 이는 매매사실 없는 허위의 소유권이전등기로서 원인무효의 소유권이전등기 이다.

따라서 피고 B이 이 사건부동산에 관하여 대구 지방법원경주지원 1963. 6. 12. 접수제 12096호로 마친 소유권이 전등기및 피고 B의 위 소유권이 전등기에 터 잡은 피고 C의 이 사건 부동산 중 19, 831/ 84, 116지분에 관한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00 . 2. 15.접수제 6924호로 마친 소유권이 전등기는 모두 원인 무효의 등기이다.

따라서 원고및선정자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, 피고 B은 64, 285/ 84, 116지분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1963. 6. 12. 접수제 12096호로 마친 소유권이 전등 기의,피고 C는19, 831/ 84, 116지분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00. 2. 15. 접수 제 692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.

나. 판단

원고및 선정자들이 이 사건부동산에 관한 소유자라거나 또는 원고및 선정자들이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부동산에 관한 피고들 명의의 위각 소유권이 전등기의 말소를 구할 물권적 또는 채권적 권리가

있다는 점에 관한 주장 입증이 없는 이상, 원고의 위주장 사실만으로는 원고 및 선정자들이 피고들에 대하여 피고들 명의의 위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할 권리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[이 법원은 수차례에 걸쳐 원고에게 피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법적 근거(물권 또는 채권)를 밝힐 것을 명하였으나, 원고는 이에 응하지 않았다], 위 주장은 이유 없다.

2. 결 론

그렇다면,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.

판사 정순열

별지